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8. 29.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안 제7조제11항)
- 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안 제10조의3제2항)
- 다.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6제2항)

- 라.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안 제13조제5항)
- 마.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20조제2항 등)
- 바.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1조제3항)
- 사.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안 제71조제3항제4호)
- 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각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안 제103조의20제1항)
- 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안 제103조의23제1항)
- 차.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합)로 변경(안 제107조제2항)
- 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지로 개선(안 제108조)
- 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안 제119조의2제1항)
- 파.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128조제3항)
- 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시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에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 조문을 추가함(안 제147조제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시가(時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제10조의3제2항 중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체 가액을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체육시설업의”를 “체육시설업을 최초로”, “경우뿐만 아니라”를 “경우와”로, “경우에도”를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의”로,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그 세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1.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2.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으로”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로, “제53조 및 제54조”를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로 본다)”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

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3조의19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2.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으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제108조제4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로,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을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를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 제32조”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을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거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가산금”을 “재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으로, “다음의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금액을 연세액”을 “후 그 금액”으로 하고, 계산식은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다음의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를 “공제한 후 그 금액을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계산식은 삭제한다.

제147조제2항 중 “해당한다) 및”을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사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 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토지에 대한 특례) 제1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과세연도	2026년	2027년
법 제112조제1항2호 적용제외 비율	100/100	50/10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u>1천분의 9</u>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u>180만원</u>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3억7천800만원</u>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1</u>)
3천억원 초과	<u>62억5천800만원</u>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4</u>)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u>1천분의 19</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3억8천만원</u>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1</u>)
3천억원 초과	<u>62억6천만원</u>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4</u>)

② (생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u>1천분의 10</u>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u>200만원</u>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0</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3억9천800만원</u> + (200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u>1천분의 22</u>)
3천억원 초과	<u>65억5천800만원</u> + (3천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u>1천분의 25</u>)

2.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u>1천분의 20</u>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u>4억원</u>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2</u>)
3천억원 초과	<u>65억6천만원</u>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5</u>)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략)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

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 8. (생략)

③ (생략)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 3. (생략)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박의 소재지. 다만, 선박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생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납세지)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 .

5. (현행과 같음)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하 이 조에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1호-----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2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거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

<신 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략)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 재산세·납부지연가산세 -----

-----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 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신고 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 3. (생략)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계 산 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생략)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후 그 금액-----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공제한 후 그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생략)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 ⑦ (생략)

제147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
----- 당한다), 제119조의2 및 -----

③ ~ ⑦ (현행과 같음)